

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·대행 동의안

의안번호	2653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 01. 23.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운영·관리사업의 전문적·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 공공기관에 사무를 대행하고자,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대행사무명 :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운영·관리

나. 대행 추진근거

- 1) 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)
- 2)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(사업)
- 3)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(구의회 동의)

다. 대행 추진 필요성

- 1)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신속대응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, 시설물 관리의 품질 제고
- 2) 공공서비스 제공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시흥2동 주민센터, 어린이집, 도서관 등이 입주한 공공복합시설인 금천종합복지타운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설관리 보장

라. 대행사무 주요 내용

- 1)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물·전기·기계·소방·수경 등 시설물 관리
- 2) 지하주차장 사용허가 및 관리
- 3) 금천종합복지타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·수시 안전점검 실시
- 4) 시설물 파손 경보수 및 구청 발주공사에 대한 기술 지원
- 5) 소방훈련 실시, 경비인력 배치 등 안전관리

마. 대행기간 : 2025. 4. 16.~2028. 4. 15. (3년)

바. 소요예산 : 290,822천원(전액구비)

사. 대행기관 : 금천구시설관리공단(금천구 시흥대로37길 18)

- 1) 설립목적 : 금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, 구민생활의 편의·복지 증진
- 2) 주요사업 : 공영주차장 관리·운영,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, 문화 체육시설 등 관리·운영, 기타 구청장의 위탁·지정사업
- 3) 위치도



아. 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(별첨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)
- 2) 지방공기업법 제76조(설립·운영)
- 3)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(사업)
- 4)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(구의회 동의)

나. 금천종합복지타운 현황

다. 공공기관 위탁·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관계법령

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지방공기업법

제2조(적용 범위)

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(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·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(이하 “지방직영기업”이라 한다)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.

9. 주택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)·토지 또는 공용·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

제76조(설립·운영)

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(이하 “공단“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7조(사업)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
2.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사업
3. 각종 구립 문화체육시설물 등의 관리와 운영사업
4.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·지정하는 사업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

제28조(대행사업) ① 공단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

제8조(구의회 동의)

① 구청장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·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
2.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·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·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4.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
5. 연간 위탁·대행금액(수탁·대행기관이 위탁·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·운영비를 포함한다)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
6. 재난, 재해 대응 등 위탁·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

③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·재대행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금천종합복지타운 현황

□ 일반현황

- 소재지 : 금하로 764
- 준공일자 : '13. 7. 8.
- 건립예산 : 29,859백만원
- 규모 : 지하1층/지상5층, 대지 3,969 m^2 , 연면적 9,151.78 m^2
- 시설관리위탁
 - 위탁기관 : 금천구시설관리공단
 - 위탁기간 : '22. 4. 16.~'25. 4. 15.
 - 위탁범위 : 전기·기계·소방·수경 시설물 등 관리, 주차장 사용허가

□ 시설현황

시 설 구 분	규 모	연면적
구립사랑채요양원	지하1층/지상5층	3,243.07 m^2
시흥2동주민센터	지하1층/지상3층	3,072.59 m^2
구립시흥도서관	지하1층/지상4층	2,421.08 m^2
구립탑골어린이집	지상1층	415.04 m^2

위탁 · 대행사무 적정성 검토 결과

□ 검토사항

	검토기준	부서 검토의견
공공성	◦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· 안정성	◦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단인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보장
	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◦ 지방공기업 경영평가, 금천구 자체감사를 통해 관리 ·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도모
	◦ 책임행정의 보장성	◦ 매년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보완과 사업 환류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 ◦ 재무 · 예산 등 경영정보, 인력, 경영계획 등 정보 공개로 신뢰성 확보
전문성	◦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◦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으로 구청과의 적극적이며 수월한 업무협조 가능 ◦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가능 ◦ 재난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가능
	◦ 수탁 ·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◦ 금천구 종합청사, 동주민센터, 구립어린이집 등 시설 관리 대행 전문기관으로 시설점검 및 경보수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 보유 ◦ 소방서 연계를 통한 종합소방훈련 실시, 시설 안전 관리계획 수립 등 전문성과 노하우 확보 ◦ 시설 관리와 운영에 특화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
효율성	◦ 경제적 효율성	◦ 금천종합복지타운이 건립된 최초년도(2013년)부터 사업을 대행하여 시설의 관리연혁, 현황 파악이 용이 ◦ 구청-공단 간의 업무범위 협의가 용이하여 공사, 경보수, 시설물 안전점검 등의 분담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
	◦ 성과 측정의 용이성	◦ 매년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성과 측정, 개선사항 보완이 용이함

□ 검토결과

-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대행 적정성 여부 : **‘적정’**